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2687 판결 [건물명도(인도) 및 차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 2023. 11. 1.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,0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송호철

별지